

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5월 3일

장 성 군 의 회 의 장



1. 조례명 : 장성군 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, 제34조 규정에 따라 장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에서 결정한(2018.12.12.) 장성군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「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장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지급기준 결정 사항 반영을 위한 별표 신설 [안 제3조제2항]
 - 2020 ~ 2022년도 장성군 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함(별표 1)

4. 예고기간

- 예고기간 : 2021. 5. 3. ~ 10.(7일간)
- 예고장소 :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(공지사항)

5. 조례안 : 붙임

6. 의견 제출

-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회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, 주소, 연락처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-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
- 받는 사람 : 장성군의회의회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

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월정수당 :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“별표 1“과 같다
제5조제1항 중 “별표 1”을 “별표 2”로, “별표 2와”를 “별표 3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표 1”을 “별표 2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지급)</p> <p>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급기준은 각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월정수당 : 월 1,814,000원</u></p> <p>제5조(여비지급 기준) ① 제4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내여비는 <u>별표 1</u>, 국외여비는 <u>별표 2</u>와 같다.</p> <p>② 관내출장여비는 <u>별표 1</u>의 국내여비 중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되, 관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2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지급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월정수당 :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“별표 1과 같다</u></p> <p>제5조(여비지급 기준) ① ----- ----- <u>별표 2</u>----- <u>별표 3</u>과 ----.</p> <p>② ----- <u>별표 2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월정수당 지급 기준표(제2조제3항 관련)

연도별	월정수당
2019년	월 1,814,000원
2020년	2019년도 월정수당에 20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(100%)만큼을 합산한 금액
2021년	2020년도 월정수당에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(100%)만큼을 합산한 금액
2022년	2021년도 월정수당에 2021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(100%)만큼을 합산한 금액